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1726 2020년 9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안 자 : 김용석 의원 외 9명

나. 제 안 일 : 2020년 8월 11일

다. 회 부 일 : 2020년 8월 21일

라. 상 정 일 : 제27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020년 9월 3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용석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, 청소년센터는 '청소년이 없다'는 문제, 비대면 활동의 필요성 확대에 따라 온라인상 청소년활동을 가능 및 편리하게 하는 원스톱서비스 방식의 통합적인 서비스제공, 온라인상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청소년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지원 추진사항을 신설함(안 제8조의2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입법예고(2020.7.17. ~ 7.24.) 결과 : 의견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의2 신설을 통해 청소년시설의 청소년 이용률 저조의 문제, 감염병 등으로 인한 비대면 청소년활동의 필요성 증대로 온라인에서 청소년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,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, 네트워크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8조의2(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지원 등) ① 시장 은 청소년활동의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 1. 미래혁신기술(「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첨단 기술을 말한다)을 활용한 온라인 이용지원 체계 마련 2.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홍보 3.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·운영 4. 그 밖에 시장이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이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③ 온라인 이용지원 및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따로 정한다.

- 안 제8조의2제1항은 청소년 온라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 혁신기술을 활용한 지원 체계 마련(안 제1호), 청소년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, 보급 및 홍보(안 제2호), 청소년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(안 제3호)을 규정하고,
- 안 제2항은 효율적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.
- 안 제3항은 구체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감염병(코로나19)으로 인해 학교의 온라인 개학, 청소년센터 및 기타 청소년 시설의 사업이 제약되고, 일부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온라인상 활동 공간을 마런하려는 본 개정안은 청소년들의 활동 지원과 청소년시설 이용 확대, 청소년활동 지원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,
- 청소년 대상 사업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, 청소년시설에 대한 공간적 한계를 일부 극복하여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'청소년활동의 온라인화'는 청소년활동에 한정되지 않고, 청소년 보호, 복지, 육성 등의 사업과도 연계하여 종합적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 - ※ 평생교육국의 검토의견: 수용 담당부서인 평생교육국은 본 개정안의 검토의견을 통해 수용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.
- 다만, 본 개정안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준용조항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시설의 상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.
- 안 제8조의2제1호는 「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」에 따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이용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, 본 개정안에서 준용한 혁신기술의 정의는 서울시가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할 기술을 정의한 것이며,

〈 본 개정안 제8조의2 제1호의 내용 〉

1. 미래혁신기술(「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첨 단 기술을 말한다)을 활용한 온라인 이용지원 체계 마련

※「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2. "미래혁신기술"이란 인공지능, 빅데이터,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 기술을 의미하며, 다음 각 목 의 신기술을 포함한다.
- 가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신기술
- 나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
- 다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1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방재신기술
- 라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및 같은 법 제16조 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
- 마. 그 밖에 새로운 특허공법 및 기술로 서울특별시혁신성장위원회에서 시의 육성이 필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- 본 개정안의 목적은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거나,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융·복합하자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보다 근접하게 표현한 법령의 정의(스마트혁신기술·서비스)를 준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.
 - ※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2. "스마트혁신기술·서비스"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·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·복합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.
- 안 제8조의2제1항제2호는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.

- 타 지자체, 민간단체, 시립시설 등은 온라인 캠페인(홍보자료 제작 및 홍보), 교류(SNS를 통한 소통, 시대읽기 등), 온라인 강의(헬스PT, 만들기, 민주시민 교육 등)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, 비대면 가능한 프로그램 중 온라인 전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우선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, 시립시설의 경우 7월 현재 535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.
- 청소년 정책에 맞춰, 청소년의 흥미, 활동분야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고, 청소년시설이 온라인으로도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〈 시립청소년시설 비대면(언택트) 프로그램 운영현황 〉

구분	총계	성격		전달방식		운영주체		개설일		참여인원
		정규	특강	쌍방향	일방향	강사	청소년	3월* 이전	3월 이후	(명)
청소년시설	535	390	145	352	183	299	236	58	477	193,499

- ※ 3월 : 청소년시설 휴관에(2020.2.24.~7.19.) 따른 비대면 프로그램 시행
- ※ 시립청소년시설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한 비대면(언택트) 우수 프로그램
 - ▶ 하자 ON(청소년직업체험센터) : 디지털 대면 직업체험 프로젝트(실시간 상호작용형 수업)
 - ▶수영·헬스 홈트레이닝(문래청소년센터): 헬스PT. 수영 영법 등 실시간 화상 코칭
 - ▶ 해봄창업공작소(광진청소년센터) : 창업을 위한 진로체험 및 활동(zoom활용 쌍방형)
 - ▶집밥콕선생(목동청소년센터) :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집밥 레시피 공유챌린지
- ※ 2021년 디지털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언택트 체험 및 우수한 학습 콘텐츠 제공 예정
 - · 웹, 모바일 등을 통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학습 콘텐츠 제공 플랫폼 구축 (미디어센터, 2021년 사업예산 919백만원 편성 예정)
- 다만, 청소년시설의 '허위 청소년 이용률 보고(홈페이지 방문자, 홍보메일 수신자, 자판기이용자, 사물함이용자, 매점이용자 등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이용자와 각각 누적 산정)'와 평생교육국의 지도·감독 소홀 등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어, 온라인 청소년활동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시설 평가기준인 청소년 이용률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- 청소년시설의 일부 수탁법인은 청소년활동의 다양성, 포괄성 등을 이용하여, 사설학원(국어, 영어, 수학, 과학, 한국사, 논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)처럼 운영하거나, 수익성이 양호한 성인·유아 프로그램(유아스포츠단, 태교요가, 웰빙출산교실, 캠 핑모임, 헬스PT 등) 등에 집중하고 있는바,

수탁법인이 온라인 청소년활동을 '새로운 청소년활동 방향'이 아닌 '새로운 수익사업 모델' 등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방안 마련이 평생교육국에 요구된다고 하겠으며, 수탁법인이 청소년활동 진흥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실제 시립청소년센터에서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

소수정예Prime교과수학, 중학논술, 경진대회 대비 영재과학올림피아드, 중등영어, 중등수학, 초등영어, 초등수학, 교과대비 한국사, EBS파닉스-심화, 종합영어 등

○ 안 제8조의2제1항제3호는 청소년활동 시설 및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·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안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과 함께 주말에만 시행되던 네트워크 사업(놀토('놀라운 토요일') 프로그램 등)이 주중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.

〈 본 개정안 제8조의2 제3호의 내용 〉

3.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·운영

- 다만, 본 조례 및 본 개정안은 청소년활동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수밖에 없으나,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청소년활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, 보호 등의 사업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 바, 청소년 사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네트워크의 확장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.
- 안 제8조의2제1항제4호는 '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'을 위해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.

- 서울시가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·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편, 경제적·사회적 여건으로 본 개정안에서 추진하는 정책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,
- 평생교육국은 관련 기관과 협의 및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모든 청소년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8조의2 제2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온라인 이용지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활동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본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, 각 시설별 공통 프로그램의 통일성 유지, 특화 프로그램의 공간적 제약의 부분적 해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.
- 청소년정책의 변화를 개별 청소년시설에 적기에 적용할 수 있어, 청소년 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접근성 제고 및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〈 본 개정안 제8조의2 제2항의 내용 〉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이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활동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- 다만,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 안내를 위해 2005년부터 청소년 활동 정보 종합안내포털인 'e-청소년(https://www.youth.go.kr)'을 운영하고 있으며, 청소년 활동, 보호, 복지 전반에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, 단순한 정보제공만으로는 정부의 시스템과 중복될 것으로 보여지는바, 비대면 또는 온라인 프로그램 특화 및 제공서비스의 다양화 등으로 국가 사업과 차별 및 특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.

- 결론적으로, 온라인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본 개정안은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활동을 촉진하며, 청소년 시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, 시립청소년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세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- 6. 토 론 요 지 : 없 음.
- 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8명, 전원찬성).
-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.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용석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1726

발의년월일: 2020년 8월 11일

발 의 자: 김용석, 최정순, 최 선,

김화숙, 정진철, 고병국, 이준형, 노식래, 신원철,

김상훈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서 일상생활권, 도심 근교지처럼 청소년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여 일상적인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지원 기 능을 담당함.

그러나 청소년수련관은 '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이 없다'는 문제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며,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 시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
온라인상 청소년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편리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방식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, 온라인상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청소년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지원 추진 사항을 신설함(안 제8조의2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의2(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지원 등)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미래혁신기술(「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첨단 기술을 말한다)을 활용한 온라인 이용지원 체계 마련
 - 2.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홍보
 - 3.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·운영
 - 4. 그 밖에 시장이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이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③ 온라인 이용지원 및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8조의2(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지
	원 등)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통
	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
	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	1. 미래혁신기술(「서울특별시 미
	래혁신기술 진흥 조례」 제2조제
	2호에 따른 첨단 기술을 말한다)
	을 활용한 온라인 이용지원 체계 마련
	2.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홍보
	3.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 기관
	<u>간 네트워크 구축·운영</u>
	4. 그 밖에 시장이 통합적인 온라
	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
	고 인정하는 사항
	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이
	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
	하여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
	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	③ 온라인 이용지원 및 청소년활동
	<u>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에 필요</u>
	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
	<u>정한다.</u>

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의2(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 지원 등)에 따라 비용 발생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가,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- 나. 추계결과 = 2,102,350천원
 -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2,102,350천원으로 연평균 420,470천원임
 - 추계의 전제
 - 안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미래혁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이용지원 체계 마련은 안 제8조의2 제2항의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에서 제외
 - 안 제8조의2 제1항 제2호의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홍보는 안 제8조의2 제2항의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비용(유지보수·개발·운영비 등)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하여 추계에서 제외(붙임1 참고)
 - 안 제8조의2 제1항 제3호의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·운영은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유사사업을 준용하여 추계(붙임2 참고)
 - 안 제8조의2 제2항의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은 서울시 평생 교육국 제출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(붙임1 참고)
 -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 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≒ 2,102,350천원 (연평균 420,470천원)
 - 총비용 = 네트워크 구축·운영 비용 +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비용

= 133,690천원 + 1,968,660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합 계
세입	_	-	-	-	-	-	_
^II H	소계(a)	-	_	-	-	-	-
세출	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·운영 (제8조의2 제1항 제3호)	26,738	26,738	26,738	26,738	26,738	133,690
	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(제8조의2 제2항)	918,680	307,000	383,660	179,660	179,660	1,968,660
	소계(b)	945,418	333,738	410,398	206,398	206,398	2,102,350
	총비용(b-a)	945,418	333,738	410,398	206,398	206,398	2,102,350

- 1)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\cdot 운영 비용 = $\sum_{i=1}^{5} (연간네트워크운영비용)i$
 - i = 비용추계 연차(2021년~2025년)
 - 연간 비용 ≒ 26,738천원
 - ·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·운영 비용은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청소년 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사업의 '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'사업비 준용(붙임2 참고)
 - 소요예산 : 26,738천원
 - · 자료: 2020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계획서
- 2)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\cdot 운영 비용 = $\sum_{i=1}^{5} ($ 연간시스템구축운영비용)i
 - i = 비용추계 연차(2021년~2025년)
 - 연간 비용
 - 1차년도 = 918,680천원
 - 2차년도 = 307,000천원
 - · 3차년도 = 383,660천원

- · 4차년도 = 179,660천원
- · 5차년도 = 179,660천원
- · 안 제8조의2 제1항 제2호의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홍보는 안 제8조의2 제2항의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비용(유지보수·개발·운영비 등)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
- ·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비용은 서울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제출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(불읶1 참고)
- · 2021~2023년 시스템 구축 이후 2024~2025년은 유지보수 및 운영비만 발생할 것은 전제하여 추계

- 연차별 소요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계	2021	2022	2023	2024	2025
계	1,968,660	918,680	307,000	383,660	179,660	179,660
유지보수	500,330	38,550	107,000	118,260	118,260	118,260
개발	774,600	470,000	112,600	192,000	-	-
서버구입 및 입주	147,005	109,005	26,000	12,000	-	-
감리비	66,525	66,525	-	-	-	-
운영비	300,200	54,600	61,400	61,400	61,400	61,400
미디어 장비 구매 및 교체	180,000	180,000 (센터별 4,500천원)	-	-	-	-

·자료: '청소년종합정보사이트(Youthnavi) 기능개선을 통한' 디지털 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계획(서울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제출 자료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백소영

28 02-2180-7954

e-mail: thdud36@seoul.go.kr